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내년 상반기 17개 포털, 12개 언론사 우선도입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대형 사이트부터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

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마련토록 했다"며 "잠정적으로 1일 방문자수 기준으로 포털 30만 명, 미디어 2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사용자가 실명으로 가입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이후엔 필명이나 별도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네이버, 다음 등 17개 포털사이트와 조인스닷컴, KBS 등 12개 언론사 사이트가 도입 대상이

된다.

변위원장은 "구체적인 도입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디어는 과급력이 크기 때문에 1일 방문자수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약관을 통해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경향신문 2006년 7월 29일

이백만 수석,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제기 "청와대는 성장엔진에 브레이크 걸어야 한다고 한 적 없다"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은 19일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및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수석은 소장에서 "청와대는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3월 10일자 '성장은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는 칼럼을 통해 허위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조선일보가 칼럼을 통해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시작한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편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작성, 게재한 글을 왜곡 인용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민들의 분노를 선동하고 국가 경제정책을 잘못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홍보수석비서관이자 공직자로

서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사건 보도는 단지 '브레이크'란 말을 꼬투리 잡아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거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이란 말은 불운한 단어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06년 7월 19일

김장배 전(前) 울산교육위의장 조선일보 상대 소송 기각

김장배(67) 울산시교육위원회 전 의장이 조선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단독 백승엽 판사는 13일 "조선일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보도활동"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울산시교육위 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적인 자리로서, 상식을 넘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당연한 책무이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3년 울산시교육연구단지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김 전 의장과 그의 장남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땅이 40% 가까이 포함됐고, 공시지가가

최저수준인 김 전 의장 등의 땅이 가장 높은 수준의 토지보상을 받은 점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조선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 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조선일보 2006년 7월 14일

신문발전위 “조선·중앙 사설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

신문발전위원회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6일치 사설에서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신문사에 6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문발전위는 ‘언론 약법 입법의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던 이 정권의 친위 언론단체 출신들이 신문발전위를 주무르고 있다’는 조선일보 주장에 대해 “신문발전위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신문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구이고 위원들은 국회의장·한국신문협회·한국언론학회·전국언론노조 등 여야, 신문업

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라고 반박했다.

신문발전위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발전위는 중앙일보가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니 뭐니 하면서 신청을 제한해 놓고, 권력 편에 선 신문에는 국민의 세금까지 끌어다 지원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제한한 적

이 없다”며 “종합일간지 가운데 3곳만 신문발전기금을 신청했고 심사 기준은 편집권의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등 신문법의 근거 조항에 따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 마감 때까지 일간 신문사들이 발행부수를 신고하지 않아 시장점유율 자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신청을 제한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2006년 7월 7일

조선일보 ‘스타벅스’ 논란 법정행

7월 초 KBS ‘미디어포커스’ 상대로 1억 3,000만 원 손해소

조선일보사와 김덕한·손정미 기자가 KBS 〈미디어포커스〉에서 조선일보가 스타벅스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갖고 스타벅스를 공격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와 〈미디어포커스〉 김대영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가액은 KBS 1억 원, 김 기자 3,000만 원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장에서 “KBS가 조선일보의 일부 기사만을 끄집어내 ‘날선 공격’을 가했

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김덕한·손정미는 기자 본연의 자세를 외면한 채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코지나 일삼는 ‘사이비 기자’들로 오해를 받게 됐고, 조선일보는 일선 기자들을 취재보다는 광고나 협찬 따오기나나 동원하는 ‘사이비 언론사’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KBS의 보도로 말미암아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물질적 손해를 입을 처지

에 놓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디어포커스〉는 지난 4월 1일 ‘이슈&비평’ 코너에서 다른 언론사의 보도나 칼럼 등의 반응과 인터뷰를 통해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중앙일보 신문무인판매대 때문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언론사가 감정이 상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스타벅스 비판기사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 2006년 8월 14일

포털사 뉴스제공 허와 실 - 기사 전제하며 입맛대로 가공

인터넷 포털은 언론인가, 아닌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털이 하고 있는 기사 선택과 화면 배치 등은 언론 행위에 해당하며, 수용자들은 포털을 언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에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해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시작했던 인터넷 포털들의 뉴스 서비스는 2001년 9.11테러,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대통령선거 등 대형사건에서 위

력을 발휘했다. 자연스레 포털의 뉴스 서비스 비중이 늘고 서비스 형태도 다양화됐다.

온라인 미디어랩인 ‘나스미디어’가 최근 6~59세 남녀 네티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46.7%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인터넷 뉴스 소비자의 90%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 ‘인터넷 뉴스’ = ‘포털 뉴스’인 셈이다. 신문에서 뉴스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는 6.9%에 불과했다.

포털의 영향력과 과급력은 상상을 초

월한다. ‘모든 뉴스는 포털로 통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소비자 입맛에선 많은 뉴스를 한자리에서 공짜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해진 영향력만큼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정성은 포털 비판의 단골 메뉴다. 포털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 연예계 뉴스를 과도하게 주요 뉴스로 다루거나 정치, 사회 관련 뉴스도 흥미 위주로 접근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포털 측에서는 “독자층이 다양하다보니 스포츠, 연예 뉴스가

주목을 받는 것이지 정치, 사회 뉴스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포털들이 클릭수에 너무 민감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포털은 오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에서도 비켜 서있다. 신문법상 포털은 인터넷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등의 문제 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뉴스 복사나 전송행위에 대해서도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댓글은 종종 언어폭력의 격투 기장으로 돌변한다. 연예인 X파일, 개뽤녀, 임수경 씨 아들 사망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포털들은 최근에는 댓글 기능을 실험제로 전환하고, 한사람이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 개수도 제한했다.

정치적 편향성 시비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시민연대는 5.31 지방선거 당시 5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했더니 정치기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에 출마한

강금실 후보에 관한 기사수가 오세훈 후보 보다 많았으며, 오 후보의 경우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비판 기사가 포털에서 작게 취급되는 점 등을 들어 “정권에 너무 우호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디어 다음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대책이 쟁점거리가 될 때 열린우리당 쪽에서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한나라당에서 똑같은 비판을 한다”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 자체가 편향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2006년 6월 13일

‘안기부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선고유예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의 보도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처럼 ‘통신 비밀’과 ‘언론 자유 법리가 직접 충돌한 사안’에 대한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陰却·성립되지 않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 입수 당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의 사례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할 때도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다했고 신중을 기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최초 불법적 자료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보도의 수단·방법 등에 있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X파일’ 보도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입게 된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인의 대화라는 점을 이유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청된 대화의 당사자나 대상 인물들은 모두 국정 방향, 국가조직의 운영, 국민의 정치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인물이나 대화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

법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명절 떡값’ 등의 제공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보도 결과로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의 경우 녹취록 전문을 게재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녹취록 등의 주요 내용을 보도해 큰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불법 감청한 것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화를 녹음한 경우 몰래 녹음됐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8월 11일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에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정보 진위 확인 없이 단정 보도”

지난 2004년 이른바 ‘왕따 동영상’ 파문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 중학교 교장 윤 모 씨(당시 60세)의 유족이 이 사건을 보도한 MBC와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는 지난 24일 윤 씨 유족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를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선정적으로 보도해 사태를 키

웠다”며 MBC와 마산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윤 씨 아들 2명에게 2,300만 원씩, 윤 씨 부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MBC는 교장 윤 씨가 수업 중 집단 따돌림을 방지할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 한 것처럼 보도하고 동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했다”

며 “이로 인해 윤 씨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왕따 동영상’ 파문은 지난 2004년 2월 경남 창원 모 중학교의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으로, 당시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 쪽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교장 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디어오늘 2006년 6월 26일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사진 무단게재 “포털, 책임 없다” 판결 논란

포털 이용자들이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포털 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무단 게재한다 해도,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포털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S스포츠투 등 4개 언론사는 포털 업체 N사가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얻음 목적으로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재하고, 해당 언론사 웹 페이지를 무단으로 연결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억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강민

구)는 26일 언론사들에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웹사이트 서비스는 회원 간 정보 교환을 위한 것이지 언론사 뉴스 무단 복제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N사가 저작권 침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N사는 언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비스를 중단한 점에 비춰보면 저작권 침해를 방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사의 사이트로 연결(링크)되도록 한 것은 상업적 이용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인터넷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천일 숙명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포털이나 P2P사이트 등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도 “기사와 사진이 불법으로 올라와 있다고 고지를 했을 경우 그 기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6년 7월 27일

금창태 사장, 한겨레21 등 역대 소송 “본인확인 없이 편파적 칼럼·성명 내 명예훼손”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5일 삼성기사 삭제 파문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단체를 상대로 역대의 민·형사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금 사장은 6일 한겨레21 고경태 편집장과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각 단체 당 1억 5,000만 원으로 모두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금 사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

에서 한겨레21 최근호에 실린 편집장 칼럼을 언급하며 “언론이라면 쌍방 얘기를 듣고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본인에게는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몰상식한 언론인’, ‘언론탄압의 표본’으로 나를 비난했다”며 “지난 40년 간 언론인으로 살아온 명예가 크게 훼손돼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금 사장은 기자회견과 민언련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비난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문제삼았

다.

금 사장은 이어 “시사저널 사태를 보도한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도 반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며 “2차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사저널 기자들은 사장사퇴와 편집국장 복귀, 삭제된 기사 게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2006년 7월 6일